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심 사 보 고 서

##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7년 8월 29일 평창군수 제출

나. 회부일자 : 2017년 9월 11일

다. 상정일자 : 제230회 평창군의회(임시회)

-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년 9월 12일) 상정

-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년 9월 14일) 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기획감사실장 남동선)

### 가. 제안이유

- 연도 중 보조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 및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금과 동계올림픽 준비사업, 군민중심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최소한의 사업비를 반영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평창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임.

### 나. 주요내용

-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510,749백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47,240백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6,194백만원이 증액된 466,762백만원, 특별회계는 1,046백만원이 증액되어 43,987백만원 임.
-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대비 일반회계가 지방세 1,343백만원, 세외수입 2,132백만원, 지방교부세 22,885백만원, 조정교부금 390백만원, 국·도비보조금

18,050백만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394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140백만원, 국·도비보조금 36백만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870백만원 임.

○ **세출예산은**

일반회계는 정책사업비 42,371백만원, 재무활동 3,407백만원, 행정운영경비 416백만원, 특별회계는 정책사업비 984백만원, 재무활동 62백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 되었음.

###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박용호)

#### 【 검토결과 】

##### ① 예산안 총규모

□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510,749백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47,240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일반회계는 466,762백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46,194백만원(10.98%)

○ 특별회계는 43,987백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046백만원(2.43%)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음.

##### ②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 세입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대비 46,194백만원이 증액된 466,762백만원임.

○ 지방세수입은 기정예산대비 지방소득세 1,343백만원이 증액된 28,264백만원 임.

○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대비 2,132백만원이 증액된 18,630백만원으로 재산매각수입 32백만원, 과징금 80백만원, 그외수입 2,020백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음.

-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대비 22,885백만원이 증액된 233,547백만원으로  
보통교부세는 18,885백만원이 증액된 217,103백만원,  
특별교부세는 인구감소지역 발전지원사업외 2건에 4,000백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음.
- 조정교부금은 팍띠공원 캠핑장 주변정비 지원 외 2건에 기정예산대비  
390백만원이 증액된 6,760백만원을 편성하였고
- 보조금은 기정예산대비 18,050백만원이 증액된 154,940백만원으로  
국고보조금은 12,151백만원이 증액된 118,133백만원,  
시·도비보조금은 5,899백만원이 증액된 36,807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기정예산대비 1,394백만원이 증액된  
24,621백만원으로, 전년도이월금 1,394백만원이 증액되었음.

### ③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대비 46,194백만원이 증액된 466,762백만원 임.
- 정책사업은 기정예산대비 42,371백만원이 증액된 392,839백만원
- 재무활동은 3,407백만원이 증액된 22,914백만원
- 행정운영경비는 416백만원이 증액된 51,009백만원이 편성되었음.

#### ○ 기능별 세출예산은

국토및지역개발분야 93,785백만원(20.09%)

문화및관광분야 77,172백만원(16.53%)

농림해양수산분야 70,035백만원(15.00%)

사회복지분야 55,487백만원(11.89%) 등의 순으로 배분되었으며

문화및관광분야가 기정예산대비 32.59%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 조직별 세출예산은

안전건설과 57,653백만원(12.35%)

문화관광과 55,342백만원(11.86%)

자치행정과 53,545백만원(11.47%)

주민생활지원과 50,882백만원(10.90%) 순으로 배분되었으며

기정예산대비 올림픽운영과 40.53%, 문화관광과 36.53%

올림픽추진단 25.68%의 순으로 증액 편성되었음.

○ 성질별 세출예산은

자본지출 258,154백만원(55.31%)

경상이전비 104,686백만원(22.43%)

인건비 46,164백만원(9.89%)

물건비 30,638백만원(6.56%) 등의 순으로 배분되었음.

4]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2017년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43,987백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046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먼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대비 730백만원이 증액된

21,957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용평·진부면 급수체계 구축 및 상수관로 확장·이설공사 등에 따른 것임.

○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741백만원으로 98백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으며

○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는 1,173백만원으로 군유지 집단화사업 등에 140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 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는 예비비 264백만원을 감액하여 시설장비유지비 등 4개 사업에 264백만원을 편성하였고

- 수질개선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78백만원**이 증액된 **18,237백만원**이 편성되었음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및 주택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변동 없음.

## 5] 종합검토의견

### □ 세입예산안

-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편성이후 증가분 및 신규확보분을 편성하였고,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전년도 정산분과 정부 추경에 따른 추경분 및 특별교부세 확보분을 편성하였음.  
조정교부금은 특별조정교부금 확보분을  
보조금은 중앙 및 도로부터 추가 또는 변경확정된 국·도비 보조금을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2016회계연도 결산 확정에 따른 국고 및 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을 각각 편성하였음.
- 이번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472억원 중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이 410억원으로 세입재원의 87%을 차지하고 있음.
- 이와 같이 편성된 2회추경 예산안의 세입추계의 적정성을 살펴보면 대부분 정확한 자료를 근거로 확정금액을 편성하여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 다만, 세외수입 중 그외수입 편성과 관련  
지난 제229회 정례회의시 승인된 2016회계연도 결산결과를 보면 전년도 보조금 미착금액은 7,020백만원이며 이번 추경까지 전액 세외수입에 편성되었음.  
그러나, 먼저 군비로 지출된 사업비 2,430백만원에 대하여는 세외수입 편성이 적정하나,  
다음연도 자금없는 이월액으로 처리된 4,590백만원을 세외수입에 편성한 것은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표1》 2016년도 보조금 미착금액

(단위:백만원)

연번	사업명	미착금액	착금일	비고
총 계 (13개사업)		7,020		
소 계(3개사업)		4,590		
1	오대산 자연명상마을 조성	4,240	'17.01.24	명시이월(자금없는 이월액)
2	평창올림픽 힐링체험파크조성	200	'17.02.20	계속비이월(자금없는 이월액)
3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150	'17.03.16	계속비이월(자금없는 이월액)
소 계(10개사업)		2,430		
1	임도사업	7	'17.02.28	군비로 지출
2	가로수 조성사업	11	'17.02.23	군비로 지출
3	농촌생활환경 정비	140	'17.06.14	군비로 지출
4	대화소재지 종합정비	603	'17.06.14	군비로 지출
5	봉평소재지 종합정비	371	'17.06.14	군비로 지출
6	진부소재지 종합정비	454	'17.06.14	군비로 지출
7	미탄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114	'17.06.14	군비로 지출
8	방림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120	'17.06.14	군비로 지출
9	동부오리 권역단위 종합정비	315	'17.06.14	군비로 지출
10	방아다리 권역단위 종합정비	295	'17.06.14	군비로 지출

※ 2016회계연도 결산서 P31, P32, 첨부서류 P447, P462, P463 참고

### □ 세출예산안

#### ○ 먼저, 재원별 편성현황을 보면

이번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472억원 중 보조사업은 287억원이고 자체사업은 185억원이 편성되었음.

- 주요 보조사업은 동계올림픽 준비사업, 오대산 자연명상마을 조성사업, 월정사 전시관 주변정비사업, 일자리 사업,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이 편성되었고
- 주요 자체사업은 평창역사 접근도로 개설 등 동계올림픽 준비사업, 관광객유치 지원사업, 지역활력센터 건립, 수해복구사업, 생활불편 해소사업 등이 편성되었음.

#### ○ 기능별로는 총규모의 40%인 190억원이 문화및관광분야에

#### ○ 조직별로는 문화관광과에 총규모의 31%인 148억원이 배분되었음.

- **성질별**로는 행사관련 경비와 지방보조금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  
 행사관련경비는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올림픽 이벤트사업,  
 문화올림픽 지원사업비의 증가에 따른 것이며  
 지방보조금은 노인일자리사업과 오대산 자연명상마을 조성사업,  
 월정사 전시관 주변정비사업비 반영이 가장 큰 이유임.

○ **중점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예산**

**(1) 삭감예산 재편성**

지난 추경예산 심사의결시 삭감된 예산중 이번 추경예산안에 재편성 제출된 사업은 4개사업 249백만원임.

《표2》 삭감예산 재편성 현황

(단위:천원)

부서명	사업명	삭감액	편성액	비고
합 계	4개사업	235,226	249,362	
문화관광과	평창문화원 집기비품 구입	50,000	50,000	P133
문화관광과	전국사진작가 촬영대회 지원	20,000	20,000	P133
문화관광과	문화예술재단 운영지원	40,226	41,862	P134
농축산과	무배추 출하조절 절임공장 전처리시설 지원	125,000	137,500	P248

**(2) 신규사업 편성**

이번 추경예산안에 반영된 자체 신규사업은 47개사업 58억원임.  
 신규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필요성과 2회추경에 편성해야 할 정도로  
 시급한 사업인지, 다른 사업과 중복·유사하지는 않은지 등  
 면밀한 심사가 요구됨.

《표3》 자체 신규사업 편성현황(1천만원 이상)

(단위:천원)

소관부서	사업명	편성액	비고
합 계	47개사업	5,790,040	
기획감사실(1)	G-100일 전국노래자랑 개최	50,000	P127

소관부서	사 업 명	편성액	비고
문화관광과 (12)	방림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	75,000	P131
	감자꽃스튜디오 시설보수	75,000	P132
	무이예술관 시설보수	15,000	P132
	문화예술회관 지붕 보수	10,000	P133
	문화예술회관 냉난방기 구입·교체	15,000	P133
	전국 사진작가 촬영대회 지원	20,000	P133
	대관령 성황사 주변 화장실 설치사업	100,000	P134
	진부 관광기반시설 개선사업	312,100	P135
	대관령 관광기반시설 지원사업	323,000	P135
	따미공원 캠핑장 주변정비사업	340,000	P138
	축제장 조성 시설물 임차	40,000	P138
	백룡호 선외기(엔진) 구입	30,000	P139
주민생활지원과(1)	어린이 놀이터 조성공사	80,000	P148
자치행정과 (3)	동계올림픽 CCTV 관제상황실 구축물품	30,000	P165
	평창군 기록관 보존환경 개선사업	25,000	P166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이전	80,000	P167
경제체육과 (3)	대화전통시장 창고 리모델링	150,000	P178
	공예전시체험관 도색	10,000	P179
	평창군민체육센터 레슬링 훈련용품	32,000	P180
환경위생과 (2)	올림픽대비 종량제봉투 제작	35,000	P186
	석면피해자 요양급여 및 요양생활수당	13,360	P186
안전건설과 (2)	설해경감 부착제설기 주민보급	149,600	P199
	숙박시설 진입도로(대관령208호)	300,000	P201
도시주택과 (8)	장기미집행 지구단위계획시설 실시설계용역	50,000	P207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시설계용역	50,000	P207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용역	100,000	P207
	횡계 소로 3-15호(명미횃집) 개설	520,000	P207
	대관령면 횡계시가지 보도정비	170,000	P207
	평창읍 중부리 행복주택 건립사업	680,000	P209
	농어촌버스 외부 디자인 변경	46,200	P209
	소산주차장 조성	90,000	P209



소관부서	사 업 명	편성액	비고
올림픽추진단 (2)	2018평창동계올림픽 근무직원 피복비	125,000	P215
	올림픽 평화의 벽 건립사업 지원	100,000	P215
농축산과 (7)	청사 주차장 확포장 공사	110,000	P245
	홈쇼핑 판매지원사업 시군비 부담금	12,000	P247
	무배추 출하조절 절임공장 전처리시설 지원	137,500	P248
	거점소독 세척시설 설치(군비 추가분)	340,780	P249
	소규모 가금사육농가 가금류 수매	44,500	P249
	친환경 황태덕장 시범사업	24,000	P250
	송어양식장 슬러지 공동처리장 지원	100,000	P250
기술지원과(1)	수출농가 유통장비 지원	15,000	P253
농공단지 특별회계(2)	위탁운영 원가계산용역	15,000	P327
	유량조정조 증설	120,000	P327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3)	용평면, 진부면 상수도 급수체계 구축사업	300,000	P351
	올림픽 경기장 주변 면은천 상수관리 이설공사	130,000	P351
	방림4리 상수관로 확장공사	200,000	P351

### (3) 계속비사업

추경예산안에 제출된 계속비사업은 총 23건이며

- 이 중, “전통민속 상설공연장 건립”과 “보건의료원 이전신축사업”이 방음시설 추가공사와 주차장 부지 추가 매입비 등의 예산소요로 총사업비가 증액 되었음.
- 신규사업은 평창읍 종부리 행복주택 건립사업으로 총사업비 65억8천만원 규모임.

계속비사업은 지속적인 사업비 증액으로 우리군에 재정적으로 많은 부담을 주고 있어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됨.

《표4》 계속비(변경·신규사업)

(단위:백만원)

구분	사업명	총사업비			2017년 까지	2018년 이후	비고
		당초	변경	증감			
합계	2개사업	17,289	18,347	1,058	15,712	2,635	
변경	전통민속 상설공연장 건립	7,678	7,808	130	7,808	0	방음시설추가 시공
"	보건의료원 이전 신축	9,611	10,539	928	7,904	2,635	주차장 부지 매입비등 추가

  

구분	사업명	총사업비	2017년	2018년	2019년이후	비고
신규	종부리 행복주택 건립사업	6,580	680	900	5,000	

(4)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결산결과에 따른 국·도비잔액 반환금은 총 3,069백만원으로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분을 반납하는 것으로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된 사업에 대하여는 그 사유와 문제점은  
 없는지 등에 대한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표5》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현황

(단위:천원)

구분	2회추경예산액	기정액	증감	비고
합계	3,069,476	398,793	2,670,683	
국고보조금반환금	2,428,362	275,822	2,152,540	
시·도비보조금반환금	641,114	122,971	518,143	

《표5-1》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내역(5천만원 이상)

(단위:천원)

부서명	사업명	반납금액	비고
합계	7개사업	1,665,169	
주민생활 지원과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사업(국고,도비)	72,235	P155
	기초연금(국고,도비)	219,421	P156
경제체육과	지역에너지절약사업(국고)	56,225	P180
환경위생과	오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국고,기금)	839,748	P187
도시주택과	주거급여사업	164,206	P210
보건의료원	국가예방접종	50,534	P239
농축산과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국고, 도비)	262,800	P255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건의사항 : 없음

○ 기타 특별한 사항 : 없음

【붙임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의결조서 1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 의 결 조 서

## 1. 예산총칙

- 제1조 :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 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510,749,123	15,322,474
일반회계		466,762,256	14,002,868
특별회계		43,986,867	1,319,606
	공기업특별회계	21,957,196	658,716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21,957,196	658,716
	기타특별회계	22,029,671	660,890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741,162	22,235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1,173,000	35,190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608,415	18,252
	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963,685	28,911
	수질개선특별회계	18,237,465	547,124
	주택사업특별회계	305,944	9,178

- 제2조 :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 제3조 : 금회 채무부담행위 사업은 없다.
- 제4조 : 2017년도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 제5조 : 2017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없다.
- 제6조 : 일반회계 예비비는 4,263,378천원으로 한다.
- 제7조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 특별회계 포함) 지방채차입한도액은 9,200,000천원으로 한다.
- 제8조 :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재무활동비, 동일 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 2. 예산의결 내역

- 예산총칙 : 원안가결
- 세입·세출예산
  - 일반회계
    - ▶ 세입예산 : 원안가결
    - ▶ 세출예산 : 원안가결
  - 특별회계
    - ▶ 세입예산 : 원안가결
    - ▶ 세출예산 : 원안가결
- 계속비 : 원안가결
- 명시이월비 : 해당없음.
- 채무부담행위 : 해당없음